**일본판결**

## 신문의 편집방침이나 성격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가 명예훼손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인 甲野太郎/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업경제신문사
대표취재역 羽佐間 重 彩 외 1 명
최고재 1993(オ) 제 1038 호, 손해배상청구사건
1997.5.27.제 3 소법정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 709 조, 제 710 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도쿄고등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대리인 弘中恒一郎의 상고이유 제 3 의 점에 대 하여 1. 본건은 피상고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된 피상고민 小林의 담화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가 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피상고희사가 발행하는 '월간후지'지 1987 년 9 월 6 일자 지면에 제 1 심 판결 별지와 같은 기사(이하 '본건 기사'로 한다)가 게재되었다. 본건기사는『甲野太郎, 자포자기 증언 나갈꺼야』제하의 7 단 기사이다.

2) 상고인은 당시 처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살인미수사건으로 1 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후에 동인을 살해했다는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본건 기사의 요지는 미합중국의 수사당국이 위 살인미수사건과 관련, 상고인을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는 사실을 보도한 후 추리소설가인 피상고인 고바야시가 "어디까지나 추리입니다"라고 하면서,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그룹에 의한 병행으로 甲野는 주범은 아니라고 계속 말해 왔다"는 것을 소개했다. 그리고 동피고인이 그 담화에서, 상고인이 공범자를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甲野자신이 A 씨 총격사건과는 별도로, 주범으로서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타사건(살인미수)의 판결(도쿄지방재판소)은 징역 6 년. 甲野로서는 6 년으로 끝난다면 감지덕지한 것이니까요. 6 년으로는 되지 않을 사건, 주범으로서 저지른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소개한 후 "'전부 폭로해 버린다'고 甲野가 떠들기 전에 입을 봉하고 싶다고 생각하고있는 놈들, 甲野의 폭탄발언에 겁을 집어먹고 있는 혐의자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끝을 맺고 있다.

3) 더구나 상고인에 대해서는 1984 년 이래 전기 각 사건의 혐의를 둘러싸고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

2. 원심은 위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 본건 기사는 이를 일독하면 피상고인 小林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추리소설 작가고서의 자유로운 입장에서 추리한 것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며, 일반 독자에 의해 상고인이 위에서 추리한 바와 같은 행위를 행하였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었다.

2) 상고인은 본건 기사가 게재되었을 당시 전기의 살인미수사건 및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의 존재론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어 동인의 사회적 평가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저하되고 있었다.

3) 기사가 게재된 '월간후지'지는 통근길의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오로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제목 등을 고안하여 주로 흥미본위내용의 기사론 게재하고 있는 신문인데 본건 기사도 상고인에 대한 살인사건의 수사보도에 관련시켜 추리소설작가의 추리를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과장되게 취급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며 일반독자에게도 이미 위 살인사건 등의 중심인물로서 그 언동이 사회로부터 주목되어 있었던 상고인에 관한 새로운 흥미본위기사의 하나로서 일독된 데 지나지 않는다.

3. 원심의 위 판단 중 3)의 점은 시인할 수 없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론 저하시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이 발행되어 당해 기사의 대상이 된 자가 그 기사내용에 따라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에 의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편집방침, 그 주된 독자의 구성 및 이런 것들에 근거한 당해 신문의 성격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는 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어떤 기사의 의미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아닌지는 당해 기사에 대한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고재 1954 년(才)제 634 호 1956 년 7 월 20 일 제 2 소법정 판결). 설령 당해 신문이 주로 흥미본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편집방침으로 하고 독자층도 그 편집방침에 대응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신문이 보도매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상 그 독자도 당해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가 한결같이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기사에 어느 정도의 진실도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례일 것이므로 그 게재기사에 의해 기사의 대상이 된 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그렇다면 위와는 달리 본건 기사가 상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게재된 신문의 편집방침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며 위 위법은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 명백하다. 이 점을 말하는 논지에는 이유가 있으며 다른 나머지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다시 심리를 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 407 조 1 항에 의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판례시보』, 1606 호, pp. 41~43.
역 : 한동원 전 중재위원